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가단152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0. 11. 19.

판결 선고2021. 1. 7.

주 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

접수 제705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216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 주식회사는 1994. 4. 25.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4. 30. F 유한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3. 6. 19.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03. 2. 14.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3,100,000원, 연체이자는 497,739원이다.

다. F 유한회사는 2008. 3. 31. G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1. 12. 28. 주식회사 H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2. 9. 26.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를 각 대리하여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D의 부친인 1은 2018.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3)와 자녀인 J, K, L, M, D(상속지분 각 2/13)이 있다.

마. D, J, K, L, M은 2018.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2/1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9. 2.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① 주장'이라 한다).

나) 부부가 한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식으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며, 이는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자가 되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②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① 주장에 관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기여분 등으로 인해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피고가 남편과 함께 장기간 거주해온 집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외에도 총 3,635㎡ 규모의 토지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20. 1. 10.자 답변서에서 D이 피고와 남편에게 끼친 재정적 손해가 실로 막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평소 D이 빚을 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8. 12.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훈

별지